

## 덧붙임 1 사업장일방폐기를 수집운반업 주요 유의점

- 차량을 바꾸면 GPS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?**
  - A. 기존에 현장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GPS단말기가 있으면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일방폐기관리→GPS단말기 관리(운반차량)에서 해당차량 단말기 정보를 삭제하고 신규 차량에 GPS단말기를 등록하면 사용 가능함
-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GPS를 설치해야 하는지?**
  - A. GPS단말기는 실제 운행하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에만 설치됨
- 올바로 전자인계서 작성 안하는 차량은 GPS를 설치해도 되는지?**
  - A.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(사업장폐기물 인수·인수) 폐기물전자인계서 제외대상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올바른시스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수집운반업, 처분·재활업은 현장정보전송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
- 10월 1일 이전에 GPS를 설치하면 되는지?**
  - A. 영업대상 폐기물을 사업장일방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2024년 10월 1일부터 현장정보(위치정보)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1일 이전에 설치해야 함
-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GPS도 사용 가능한지?**
  - A. 현장정보관리시스템 (<https://www.allbaro.or.kr/siren>)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→ 연락처 장비공급 및 A/S 업체에서 공단의 '전송 규격 및 기능' 항목에 확인 가능함 하실 수 있음,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단말기는 사용이 가능함
- 유예기간 있는지?**
  - A. 유예기간은 없으며, 사전에 미리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일(24.10.1)부터 정상적으로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함
-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?**
  - A.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,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현장정보 전송장치 장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(환경공단 본사)에 전자정보포로그램 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제출해야 함
  - 장애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서, 대제진송이 허용됨(대제진송 허용기간은 최대 15일)
  - 위치정보의 경우, 장애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사에서 허용해준 차량에 한해서만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위치정보를 전송 가능함
  - ※ 고시 제103호(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) 참고

- 가능, 가격대는 제조사에 따라 상이합니다. 현재 3년 약정에 월사용료 9천원~12천원 대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**
- 배출차이고 차량이 없는데 배출차도 GPS를 설치해야 하는지?**
  - A. 사업장폐기물배출차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만 현장정보(위치정보)를 전송하기 위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함
  - ※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[별표 1]
- 5. 중간기공폐기물, 고철, 폐지 등을 운반하는 차량도 GPS를 설치해야 하는지?**
  - A.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호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기공폐기물 올바른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유예(폐자원관리과-458, '21.6.30)에 따라 현장정보 전송대상에서 제외됨
- 전용차량의 경우 고정형 단말기만 설치해야 하는지?**
  - A. 전용차량은 차량용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, 임시차량은 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 등을 통해 연결하여 사용해야 함
  - ※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[별표 1]
- GPS 등록 언제부터 가능한지?**
  - A. 영업대상을 사업장일방폐기물로 하는 수집운반업, 처분·재활업에 대한 자동전송포로그램이 2024년 5월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임
  - 따라서 2024년 5월부터 GPS 단말기 및 자동전송포로그램 설치 가능
-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기록장치(DTG)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했는데 호환 가능한지?**
  - A. 보유하신 DTG 장치가 현장정보 전송 규격 및 기능을 갖고 있으면 사용 가능
- 현장정보 자동전송 되는 거면 올바른 인계서는 안써도 되는건지?**
  - A.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올바른시스템 전자인계서와 현장정보를 같이 전송 해야 함
- GPS만 설치하면 다른 부분은 신경 안써도 되는지?**
  - A. 수집운반업 전용차량은 차량용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, 임시차량은 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 등을 통해 연결하여 사용 가능 또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마다 현장정보(위치정보)를 전송해야 함
- 군부대 갈 때는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?**
  - A. 위치정보 제외는 고시 제4호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됨 만약 해당 차량이 군사시설 뿐 아니라, 일반적인(군사시설 외) 배출차로부터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다면 해당 위치정보는 전송해야 해야 함.

-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다른 정보를 운반할 수 없는지?**
  - A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2조(별표 8)제1호기목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다른 장비 등 운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. 다만,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폐기물외의 장비를 혼합하여 운송할 수 없음
  - ※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 폐기물외의 화물이나 장비를 운송한 사항은 "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"에 저촉됨으로 국토부 물류산업과 문의
- 폐기물 운반 외에 사용할 경우에도 위치정보 전송이 되는지?**
  - A. 전용차량의 경우 GPS 단말기 탈부착이 불가능하고 시동이 켜지고 동시에 위치정보가 자동 전송되므로 현장정보만을 구분해서 전송할 수는 없으나, 올바른인계서와 비교하여 현장정보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·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계획임
  - 임시차량은 폐기물 운반 외에 사용할 경우 시거잭을 통해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현장 정보를 신별하여 전송하면 됨
- GPS 판매사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?**
  - A. 현장정보관리시스템 (<https://www.allbaro.or.kr/siren>)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→ 연락처 장비공급 및 A/S 업체에서 공단의 '전송 규격 및 기능'에 합격한 단말기 목록을 확인가능
- 배출차가 운반자의 위치정보 볼 수 있는지?**
  - A. 현재는 배출차가 운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현장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관련법령 검토 후 시스템개발 예정임
- 현장정보를 전송 의무 위반 시 벌칙,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?**
  - A. (행정처분)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

행정처분기준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)				
위반행위	근거법령	1차	2차	3차
4.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수·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포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	제27조 제2항 제3호	영양장치 1개월	영양장치 3개월	영양장치 6개월

(벌칙) 폐기물관리법 제6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\*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수·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
- GPS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?**
  - A. 현장정보관리시스템 (<https://www.allbaro.or.kr/siren>)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→ 연락처 장비공급 및 A/S 업체에서 공단의 '전송 규격 및 기능'에 합격한 단말기 목록을 확인

- 따라서, 고시 [별표 1] (비고) 2) 가)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하여 군사시설의 폐기물을 운반할때는 탈착하였다가, 그 외 폐기물 운반시에는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함**

(이미 고정형으로 설치했다는 업체의 경우, 단말기 업체에 연락하여 탈부착형으로 변경 설치하여 사용가능 함)
-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가져와서 임시보관장소에 모아놨다가 큰 차량으로 처리장에 이동하는 경우, 중간에 차량이 변경되는데 현장정보 전송에 문제가 없는지?**
  - A. 인계서상에 임시보관장소 경유를 표시하고 운반차량 모두를 입력한 경우,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정보를 각각 전송해야 함.
  - 다만, 이 경우 임시보관장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여야 가능함.
  - ※ 현장정보 전송 외의 폐기물 인계·인수 기한초과, 인허가 등에 대한 위반 문제는 별개
- 탈부착형 GPS 한 개로 차량 여러 대에 사용 가능한지?**
  - A. 사업장일방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탈부착형 GPS단말기는 임시차량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일방폐기물관리→GPS단말기 관리(운반차량)에서 해당차량 단말기 정보를 삭제하고 신규 임시차량에 GPS단말기를 등록하시면 사용이 가능함.
- GPS의 고장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지 ?**
  - A. 펌웨어형 단말기내에 상태표시 LED(초록색: 정상, 빨간색: 이상)로 단말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장정보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정상작동되고 있는 차량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임